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오산 세교 아테라에서는 분양상당면적(1551-433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료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우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오픈 및 마감)를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료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제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 정	'25.05.30.(금)	'25.06.09.(월)	'25.06.10.(화)	'25.06.11.(수)	'25.06.18.(수)	'25.06.20.(금)~'25.07.01.(화) (10:00~17:00)	'25.07.21.(월)~'25.07.23.(수)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초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방문접수	
장 소	▪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경기도 오산시 궏동 614-3번지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		
비 고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등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연차제, 주소 우호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382번지[오산세교 2 택지개발지구 A12BL]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2층~ 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이하 433세대[일반공급 115세대, 특별공급 318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4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4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6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1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 85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21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43세대) 포함]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발코니 확장 여부	확장면적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2025 0109196	01	059.8700A	59A	59.8700	24.5250	84.3950	9.3854	39.4833	133.2637	50.2917	Y	23.6440	433	42	42	64	21	85	21	43	115	22	'27.11		
	02	059.8700B	59B	59.8700	24.5250	84.3950	9.3854	39.4833	133.2637	50.2917	Y	24.6575	117	11	11	17	6	23	6	11	32	6			
	03	059.8200C	59C	59.8200	20.5045	84.3245	9.3776	39.4503	133.1524	50.2497	Y	18.7304	149	14	14	22	7	29	7	15	41	7			
	04	059.9200D	59D	59.9200	24.5455	84.4655	9.3933	39.5162	133.3750	50.3337	Y	25.5922	59	6	6	9	3	12	3	6	14	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용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인빌 단위세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ossg.co.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² × 0.3025 또는 ㎡² ÷ 3.3058)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 ²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입주지정일	
					계약 시	'25.11.17	'26.03.17	'26.07.15	'26.11.12	'27.03.12	'27.07.10			
59A	117	1층	5	321,320,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41,396,000	55,000,000	
		2층	5	324,740,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42,422,000	55,000,000		
		3층	6	331,580,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44,474,000	55,000,000		
		4층	6	338,420,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46,526,000	55,000,000		
		5층 이상	95	341,840,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47,552,000	55,000,000		
59B	108	1층	6	321,320,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32,132,000	41,396,000	55,000,000		
		2층	6	324,740,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32,474,000	42,422,000	55,000,000		
		3층	6	331,580,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33,158,000	44,474,000	55,000,000		
		4층	6	338,420,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33,842,000	46,526,000	55,000,000		
		5층 이상	84	341,840,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34,184,000	47,552,000	55,000,000		
59C	149	1층	7	321,060,000	32,106,000	32,106,000	32,106,000	32,106,000	32,106,000	32,106,000	41,318,000	55,000,000		
		2층	7	324,480,000	32,448,000	32,448,000	32,448,000	32,448,000	32,448,000	32,448,000	42,344,000	55,000,000		
		3층	7	331,310,000	33,131,000	33,131,000	33,131,000	33,131,000	33,131,000	33,131,000	44,393,000	55,000,000		
		4층	7	338,140,000	33,814,000	33,814,000	33,814,000	33,814,000	33,814,000	33,814,000	46,442,000	55,000,000		
		5층 이상	121	341,560,000	34,156,000	34,156,000	34,156,000	34,156,000	34,156,000	34,156,000	47,468,000	55,000,000		
59D	59	1층	1	321,60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41,480,000	55,000,000		
		2층	1	325,020,000	32,502,000	32,502,000	32,502,000	32,502,000	32,502,000	32,502,000	42,506,000	55,000,000		
		3층	3	331,860,000	33,186,000	33,186,000	33,186,000	33,186,000	33,186,000	33,186,000	44,558,000	55,000,000		
		4층	3	338,70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46,610,000	55,000,000		
		5층 이상	51	342,130,000	34,213,000	34,213,000	34,213,000	34,213,000	34,213,000	34,213,000	47,639,000	55,0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신청자격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현재 수도권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약 무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발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가민 등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구 재대군인, 10년 이상 복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사, 대한민국의예우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철거민),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구 재대군인),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귀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단(대한민국체육유전자 및 그 유족) 등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현재 수도권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⑤)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하인(2006.05.31. ~ 2025.05.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임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적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현재 수도권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⑤)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인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세대원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적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현재 수도권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⑤)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태아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의 경우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적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현재 수도권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⑤)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명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